

창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60943(본소), 2021나60950(반소) 판결

[공사비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구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22.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소8685(본소),
2021가소295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의, 2021. 7. 22.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3/4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1,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자재 판매, 온실시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림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의뢰

- 1) 피고는 2020. 2.경 경남 함안군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소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설치 공사비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기로 하였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면서, 'E' 작성의 설계도면(갑 제1호증, 3연동, 길이 22m)을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3연동을 2연동으로 줄이는 대신 길이는 30m로 변경하고 그 옆 부지에 비가림하우스 1동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견적서

- 1) 원고는 2020. 2.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29,537,147원인 견적서(을 제22호증의 1)를 제공하였다.
- 2) 원고는 2020. 6.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47,200,058원인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를 제공하였다.
- 3)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0. 8.경 공사대금 49,030,251원인 함안군 제출용 견적서(을 제2호증)와 함께 공사대금 39,304,463원인 견적서(을 제3호증)를 제공하였다.
- 4)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9,304,463원인 견적서의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0. 9. 25. 피고에게 공사대금 41,014,963원으로 수정된 견적서(을 제4호증, 2연동, 길이 30m)를 제공하였다.
- 5) 피고는 2020. 10.경 원고에게 2연동의 길이 40m인 견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2연동의 길이 40m인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라. 원고의 공사 완료 및 견적서 추가 제공

1) 원고는 2020. 10.말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규모를 2연동의 길이를 40m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갑 제14, 15호증, 을 제11호증), 2020. 11.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공사명 'D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공사대금 49,030,000원(함안군 제출용)인 견적서(을 제5호증, 2연동, 길이 40m) 및 공사대금 56,206,943원(원피고 내부용)인 견적서(갑 제8호증, 2연동, 길이 40m)를 제공하면서, 공사대금으로 56,206,943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4, 15, 18호증, 을 제2 내지 6, 9, 11호증,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연동의 길이를 40m로 전제하고 피고와 공사대금을 49,030,000원으로 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할 무렵 연동의 길이를 기존 30m에서 40m로 연장하여 시공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그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총 공사대금은 56,860,203원(= 2연동 길이 40m를 전제로 한 공사대금 56,206,943원 + 2020. 11. 28.자 보수작업비 253,260원 + 2020. 11. 4.자 견인비 4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830,203원(= 총 공사대금 56,860,203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 49,03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7,8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20. 10.말 연동의 길이를 40m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만약 피고 주장처럼 공사대금 49,030,000원이 연동의 길이를 40m로 전제하고 책정된 금원이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20. 10. 28. 이전에 연동의 길이를 40m로 전제하고 공사대금 49,030,000원을 책정하는 내용의 견적서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견적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가 공사대금 증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무렵에서야¹⁾ 원고에게 연동의 길이를 40m로 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9호증)에는 ‘귀사에서 주장하는 연동하우스 40m 확장 요구에 대하여는 견적 의뢰 후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장기간 출타하여 견적서를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추후 2020. 12.경 공사 인부로부터 받아 보았으나 검토할 시간이 없어 차일피일 하던 중 공사비를 청구하여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완공전 최초 행정제출용 견적서로 계약된 금액 49,03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최초 견적시 행정제출용 견적과 실제공사 견적이라는 2가지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견적에는 2연동 1동 및 단동 1동 견적액이 39,304,000원 행정제출용은 49,030,000원으로서 9,726,000원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증명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²⁾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가 2020. 10. 28.보다 이후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다[함안군의 문서송부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갑 제21호증)는 2020. 11. 27. 발급받은 것이다].

3) 각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건비 합계는 아래와 같다.

견적서	인건비	비고
공사대금 29,537,147원	8,500,000원	을 제22호증의 1
공사대금 47,200,058원	10,500,000원	을 제22호증의 2, 길이 30m
공사대금 49,030,251원	10,500,000원	을 제2호증, 길이 30m
공사대금 39,304,463원	10,000,000원	을 제3호증, 길이 30m
공사대금 41,014,963원	10,000,000원	을 제4호증, 길이 30m
공사대금 49,030,000원	6,622,000원	을 제5호증, 길이 40m
공사대금 56,206,943원	13,238,100원	갑 제8호증, 길이 40m

연동의 길이를 40m로 한 공사대금 49,030,000원인 견적서(을 제5호증)에 기재된 인건비 6,622,000원은 연동의 길이를 30m로 한 각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에 기재된 인건비보다 적은 금액인 점, 연동의 길이를 30m로 한 견적서의 공사대금(49,030,251원)이 연동의

길이를 40m로 한 견적서의 공사대금(49,030,000원)과 그 액수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 49,030,000원인 견적서는 함안군 제출용이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의된 견적서는 공사대금 56,206,943원인 견적서로 보인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피고가 파종시기를 놓쳐 입은 손해로 공사대금 49,03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4,903,000원, 원고가 설계도면에 기재된 자재보다 적게 시공함으로써 누락된 자재대금 3,426,000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3,080,000원 합계 11,409,000원(= 4,903,000원 + 3,426,000원 + 3,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주식회사 금산이 2021. 3.경 작성한 견적서(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처짐 현상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이 3,0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비용 3,0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원고의 과실로 인해 지연되었다거나 누락된 자재대금이 3,426,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4.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3),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1. 7.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득 관

판사 윤 정, 판사 이큰가람

1) 송장(갑 제14호증)에는 원고가 2020. 10. 26. 주식회사 F으로부터 추가 아연각관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20. 10. 28.부터 2020. 11. 26.까지, 공사대금 49,0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1000, 계약보증금 4,903,000원으로 수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제1심은 인용 원금 6,506,000원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2021. 7. 21.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지 않고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였으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잘못 적용한 제1심판결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